



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

(1쇄 정오표)

면	행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
23		<p>이사회 감사(감사위원회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~</td> <td>보고대상</td> </tr> <tr> <td>~</td> <td>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(감사위원회) ※ 이사회 감사(감사위원회) →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 가능</td> </tr> </table>	~	보고대상	~	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(감사위원회) ※ 이사회 감사(감사위원회) →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 가능	<p>이사회(, 추가) 감사(감사위원회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~</td> <td>보고대상</td> </tr> <tr> <td>~</td> <td>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(감사위원회) ※ 이사회, 감사(감사위원회) →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 가능</td> </tr> </table>	~	보고대상	~	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(감사위원회) ※ 이사회, 감사(감사위원회) →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 가능				
~	보고대상														
~	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(감사위원회) ※ 이사회 감사(감사위원회) →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 가능														
~	보고대상														
~	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(감사위원회) ※ 이사회, 감사(감사위원회) →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 가능														
40		<table border="1"> <tr> <th colspan="2">회 사</th> </tr> <tr> <td>~</td> <td>직전연도에 감사를 받은 회사 ----- 직전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</td> </tr> <tr> <td>~</td> <td>직전연도에 감사를 받은 회사 ----- 직전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</td> </tr> </table>	회 사		~	직전연도에 감사를 받은 회사 ----- 직전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	~	직전연도에 감사를 받은 회사 ----- 직전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	<table border="1"> <tr> <th colspan="2">회 사</th> </tr> <tr> <td>~</td> <td>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은 회사 -----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</td> </tr> <tr> <td>~</td> <td>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은 회사 -----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</td> </tr> </table>	회 사		~	직전 사업 연도에 감사를 받은 회사 ----- 직전 사업 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	~	직전 사업 연도에 감사를 받은 회사 ----- 직전 사업 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
회 사															
~	직전연도에 감사를 받은 회사 ----- 직전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														
~	직전연도에 감사를 받은 회사 ----- 직전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														
회 사															
~	직전 사업 연도에 감사를 받은 회사 ----- 직전 사업 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														
~	직전 사업 연도에 감사를 받은 회사 ----- 직전 사업 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														
63	하8	경영진 주장에 대하여 회계감사	경영진 주장에 대하여 회계감사												
78	상9	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게 할 주체는 감사인 은 권한이 없고 회사의 감사위원회(감사)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수행한다.	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게 할 주체는 회사 의 감사위원회(감사)이다. 회사의 감사위원회(감사)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수행한다.												
79	상4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감사인</div> <p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감사위원회(감사)통보</div> <p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주주(사원)총회 보고</div> <p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</div> </div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감사위원회(감사)통보 하단 삭제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감사인</div> <p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감사위원회(감사)통보</div> </div>												
95	하7	제28조(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)	제27조(자료의 제출요구 등)												

면	행	수정 전	수정 후
108	상1	감사인에 대한 조치	감사인에 소속한 공인회계사 에 대한 조치
124	하16	공동기금은 한국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	(삭제)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은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
146	하7	3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3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
147		~ 3년	~ 2년
		~ 선고유예기간 중	~ 선고유예기간 중
		~ 복권되지 아니한 자(※ 경제적으로 파산되어 도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)	~ 복권되지 아니한 자(※ 경제적으로 파산되어 도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)
		~ 5년 (※ 위 금고이상 실형이 종료 후와 본 호는 모두 5년이라는 자격제한 기간이 동일하다. ~ 그 이유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 파 면 또는 해임되고, 공인회계사법이나 세무사 법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 되었을 때 제 명 또는 등록취소라는 징계를 받기 때문이다)	~ 5년 (※ 위 금고이상 실형이 종료 후와 본 호는 모두 5년이라는 자격제한 기간이 동일하다. ~ 그 이유는 대체로 근무하는 기관에서 금고이 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, 파면 또는 해임되고, 공인회계사법이나 세무사법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 되었을 때 제명 또는 등록취소라 는 징계를 받기 때문이다)
161	상8	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 (공인회계사법 제13조 : 손해배 상책임의 보장)	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 (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3조 : 손해배상책임의 보장)
170	하4	외국공인회사도 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.	외국공인회계사 도 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.
171	하9	→ 직무정기간 중에	→ 직무정지기간 중에
173		법령 제28조(손해배상준비금) 아래 시행령 추가  법령 : 시행령 제20조(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)	
		<p>① 회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 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회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.</p>	

174		<p>법령 제29조(타법인출자의 제한등) 아래 시행령 추가</p> <p> 법령 ✕ 시행령 제21조(타법인 출자등의 한도)</p>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cyan; padding: 10px;"> <p>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(“자기자본”이라 하며,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100분의 25(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)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자기자본중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</p> </div>	
176	하7	<p>~ b.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회사</p>	<p>~ b.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(배우자는 재무직원인 경우만 해당)에 직원이었던 회사</p>
190	상8	<p>Q 미국, 일리노이주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외국공인회계사로 등록한 경우</p>	<p>Q 미국, 일리노이주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가 금융위원회에 외국공인회계사로 등록한 경우</p>

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

(2쇄 정오표)

면	행	수정 전	수정 후
15	하1	그 종속회사의 별도 재무제표	그 지배회사의 별도 재무제표